

議案検討報告書

1. 発議 또는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2. 件 名 :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에
대한 修正案
3. 案 件 要 旨 : 別添 參照
4. 檢 討 意 見 : 別添 參照

위 議案에 對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2년 6月 日

内務委員會

専門委員 李永周



目 次

1. 提 案 理 由 ----- 2
2. 主 要 骨 子 ----- 2
3. 檢 討 意 見 ----- 3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에 대한修正案

檢 討 報 告

이修正案은 1992. 5. 30.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 6. 3.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

1. 修 正 理 由

既議會에 提出된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 内容中 法律用語醇化에 適合하지 않은 一部 字句를 修正하고 地方公企業法에 根據하여 公社 設立에 必要한 條項을 新設하였으며 未備한 一部 條文 内容을 修正 運用되도록 하려는 것임.

2. 修 正 主 要 骨 子

가. 一部 字句 修正

- 法律用語醇化에 適合하지 못한 24個 字句를 修正 補完함.
(別添)

나. 條文 新設

- 業務上 餘裕金을 國債, 地方債 取得과 金融 機關에 預入外에는 使用하지 못하도록 規定함. (案 第35條)
- 紿與 및 退職手當의 支給基準을 定하여 直轄市長의 承認을 받고 直轄市長은 長官의 承認을 얻도록 함.
(案 第36條)

다. 一部 修正

- 條例 第2章 第19條(事業業務)1號 建設資材 生產 및 販賣事業中 시멘트 加工事業, 레미콘 및 아스콘 事業은 除外하며
- 條例(案) 第27條(損益金의 處理)1項2號에 資本金의 缺損補填을 위하여 “法定準備金의 積立” 을 規定하였고
- 附則 第 2條(權利業務承繼)에 既存會社를 解散하고 公社를 設立할 경우 해산된 會社의 權利承繼規程을 定함.

라. 削除 條文

- 最初의 事業年度에 대한 經過措置 公社의 最初의 事業年度는 案 第 23條 規程에 불구하고 公社의 設立日로부터 그해 12月 31日까지로 한다는 削除함. (案 附則 第2條)

3. 檢 討 意 見

本 案件은 지난 '91年 12月 6日 第7回 定期會議時 提出되어 審議保留 되어온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에 대한 修正案으로써 本 條例案內容中 不適合한 用語와 一部字句를 修正하는 것이며 必要한 條項을 新設하는한편 未備한 一部 條文內容을 修正하려는 事項임.

主要 内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一部 字句를 修正하는 内容으로써 法律用語에 適合하지 않은 24個 字句를 醇化 補完하였음.

둘째, 條文을 新設하는 것으로써 業務上 餘裕金을 國債, 地方債 取得과 金融 機關에 예입하는 외에는 使用하지 못하도록 하는 内容의 餘裕金 運用 條項(第35條)을 新設하였음.

또한, 任職員과 職員에 대한 紿與 및 退職手當의 支給 基準을 정하여 市長의 承認을 받도록 하는 條項(第36條)을 New設하였음.

셋째, 條項 一部를 修正하는 内容으로써 案 第19條 事業 業務 第1號의 建設 資材 生產 및 販賣 事業中 “시멘트 가공업과 레미

콘 및 아스콘 事業”을 除外하였으며 案 第 27條 損益金의 處理 第1項 2號에 資本金 損失 保全을 위한 “法定 準備金의 積立”을

새로이 規定하였고, 또한 附則 第2條 事業年度에 대한 經過 措置를 削除하는 한편 同條에 權利義務 承繼 事項을 새로이 New設하였음.

本 修正案 内容을 살펴보면 그간 公社의 對象 事業으로 누차거론되었던 案 第 19條의 建設 資材 生產 및 販賣에 있어서 시멘트

가공사업과 레미콘 및 아스콘 生產을 除外한 것은 우리지역 中小企業 保護 育成 側面에서 當然한 措置라 볼 수 있겠으며, 案 第

27條의 餘裕金 運用에 있어서는 公社의 餘裕資金을 國債, 地方債의 取得과 金融機關에 豫入하는것외에는 달리 運用하지 못하도록

制限하였음은 效率的인 資金管理面에서 필요한 制限 根據 마련이라 判斷됨.

그 동안의 審議 過程에서 나타난 몇가지 問題點이 修正된 것은肯定的인 補完 事項이라 料됨.